

청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509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5090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16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백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법무법인 C

변론 종결2024. 3. 7.

판결 선고2024. 9. 26.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162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2023. 12. 8.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2024. 9. 2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는 2002. 11. 15.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업, 폐자원 재활용업, 에너지 개발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 사이의 경영자문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경북 의성군 ○ 공장용지 6,795m², P 공장용지 2,567m², Q 공장용지 1,865m²(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상당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R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 및 양수금 채권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2) 이에 원고는 2020. 3. 31.경 주식회사 L(대표자 H), 주식회사 M(대표자 S), N(이하 합하여 '이 사건 경영자문역'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영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영자문용역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 (원고, 이하 같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신축사업" (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프로젝트 전반의 사업자문에 대하여 "을"(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N, 이하 같다)이 독점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이하 '본건 경영자문'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갑"이 "을"에게 본건 경영자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 사업권 대출에 있어서 "갑"의 신용이 문제되므로, "을" 중 주식회사 M과 목적매매를 하여 1년 뒤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현재 "갑"의 소송문제에 대하여는 "을" 중 주식회사 L이 소송을, N이 소송비용 지원을 각 담당함

제4조(본건 경영자문의 내용)

① "을"은 본건 경영자문의 독점적 경영자문 인력으로서 "갑"이 본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문을 하며, "갑"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하기 위한 경영자문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을"의 본건 경영자문 업무는 본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부지 권리자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들과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진행 방법을 제안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며, 필수사업비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의 업무와 계약기간 동안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문용역업무를 포함한다.

③ 상기 본건 경영자문의 제안 내용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업무 수행에 외부 전문인력 또는 전문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업무를 "갑"의 비용부담으로 하여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이 계약은 계약의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을"이 "갑"에게 사업진행 방법 제안 및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5개월로 한다. 단, 대출의 상환기간은 12개월로 하고,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경영자문 용역비)

① "갑"은 "을"에게 다음의 조건에 따라 경영자문 용역비를 지급한다. 경영 및 사업자문에 대한 용역비는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착수금	계약일	수익금의 40%
용역비	"갑"의 항소심 판결일	

"갑"의 항소심 판결일이란, 항소심을 통하여 수익을 취득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 및 경매, 근저당수익을 포함한다.

② "갑"은 제4조에 기재된 "을"의 본건 경영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범위, 내용 및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유로 전항의 보수는 본건 경영자문 업무에 대한 별도 평가 또는 이의제기 없이 지급함에 동의한다.

③ "갑"이 예정된 지급일까지 경영자문 용역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지급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된 경영자문용역금액에 대해 연 2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조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경영자문 용역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갑"은 민·형사상의 이익, 소 제기, 기타 민원 등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17조(비용의 부담)

- ① "을"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사업타당성 분석 및 신용평가,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 ② 본건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을"이 제3자와의 민·형사상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이 면책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원고의 보수 지급

- 1) 원고의 대리인 B는 이 사건 경영자문역 중 하나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인 H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2020. 3.경 ① T조합 관련 민·형사 사건, ② 이용 관련 민·형사 사건, ③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관련 민사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 ④ G 관련 형사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각 사건마다 보수를 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 2) 원고는 2020. 4. 27.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① 내지 ④ 각 수임 사건 보수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민사사건 진행 경과

- 1) 원고는 2020. 9. 17.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F를 상대로 '원고가 F의 물상보증인으로서 F의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15억 원 중 일부인 2억 1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U).
- 2) 원고는 2021. 5.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29.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및 보수 반환청구

원고의 대리인 B는 2021. 5. 7. 피고 소속 변호사인 V에게 전화하여 위임관계를 종료하고 지급된 보수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V은 보수의 반환에 관해서는 H에게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바. 이 사건 형사사건 진행 경과

피고는 2021. 5. 18. 'G가 원고를 기망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실제 보유 채권액(47,847,956원)을 초과하는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형사사건 고소장을 작성을 마치고 이를 이 사건 민사사건 판결문과 함께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 보수 반환 논의

1) 피고의 대표변호사 W은 2021. 5. 25. H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합계 200,000,000원 중 ① T조합 관련 민·형사 사건, ② 이용 관련 민·형사 사건 보수 합계 100,000,000원은 반환해 줄 테니, ③ 이 사건 민사사건 및 ④ 이 사건 형사사건 보수 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에 관하여는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2) 원고의 대리인 B는 2021. 6. 7. 피고에게 '이 사건 민사사건은 상대방의 무대응으로 종결되었고, 이 사건 형사사건의 경우 위임사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위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변호사 보수 1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그중 990만원뿐 나머지 9,010만 원은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 관련 사건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는 별도로, 2022. 1. 5. 피고를 상대로 위 ① T조합 관련 민·형사 사건, ② 이용 관련 민·형사 사건 보수 합계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11.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I).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2023. 12. 8.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J), 위 판결은 2024. 1. 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1, 12, 15,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 8, 9, 12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경영자문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경영자문역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이

재산, 노무 등 출자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보수 반환채권은 원고와 이 사건 경영자문역으로 구성된 동업체의 합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동업자인 조합원들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동업자들 전원이 아니라 그중 1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경영자문용역계약은 경영자문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위 계약 어디에도 원고와 경영자문역이 이 사건 사업의 동업 내지 공동경영을 위하여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21, 22호증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원고와 이 사건 경영자문역 사이의 조합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자문용역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사무처리를 사건당 보수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임하고, 이 사건 보수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사건은 상대방이 대응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형사사건은 고소장조차

접수되지 아니하는 등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임한 이 사건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사무처리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내용 및 난이도, 피고의 사건 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보수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 중 9,01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살피건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성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는데(민법 제689조 제1항), 원고의 대리인 B가 2021. 5. 7. 피고 소속 변호사 V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종료와 기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위 통지를 전달받은 피고의 대표변호사 W이 2021.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합계 2억 원 중 이 사건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의 반환을 제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및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피고의 대표변호사에게 전달된 위 2021. 5. 25. 무렵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보수 반환의무 가) 관련 법리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수임료를 선지급한 경우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선지급한 수임료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수임료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시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원고의 질의에 응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수는 피고의 실력과 유능함을 높이 산 원고가 상당하다고 받아들인 금액을 기꺼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시까지 이 사건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행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피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및 처리된 사무에 대한 원고의 이익,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수 중 3,000만원은 이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2020. 3.경부터 그 계약이 해지된 2021. 5. 말경까지 약 1년 3개월가량 계약기간이 유지되었는데, 그 동안 피고는 소속 변호사의 면담(총 2회)과 이메일을 통한 질의회신과 자료수집을 거쳐 이 사건 민사사건의 소장과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다만, 면담의 횟수, 질의회신의 횟수, 검토한 자료의 분량과 내용, 작성된 소장과 고소장의 분량과 내용 등에 비추어, 소장과 고소장의 작성까지 과중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이 사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2020. 8.경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소장 작성 후로 추가적인 변론활동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 사건 민사사건의 소가(청구원금)는 2억 100만 원이고,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소 제기 당시 향후 청구취지를 15억 원까지 확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실익이 없음을 고려하여 확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송위임을 통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2020. 9.경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사항을 작성하고, 2020. 10.경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21. 3.경 고소장을 완성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위임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실제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거나 추가로 법적 자문이 제공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고소를 통해 원고가 G에게 임의경매 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6,000만 원의 회수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의 위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액은, G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47,847,956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2,152,044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수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고소장에 위 47,847,956원에 관한 사기의 점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2023. 10. 25.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5,284,77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과 위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

2)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M이 202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M 사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도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3. 10. 25. M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23. 11. 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같은 날 바로 관련 소송의 항소심 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을 하겠다."는 사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변론이 재개되지 않자 12일 후인 2023. 11. 13.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3차전111144호로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② 피고는 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경부터 수년간 M으로부터 각종 민사, 행정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중략~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을 제기당한 후 관련 소송의 항소심 변론 준비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M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략~ M은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는바, 이에 피고와 M이 상호 협의 끝에 M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도의 원인관계라는 자신의 M에 대한 보수 채권에 관하여, M으로부터 수년간 10여 개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면서 소송위임계약은 모두 구두로 체결되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2023. 10. 25.에 이르러 보수채권을 총 20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할 뿐 개별 소송사건의 각 보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각 사건 보수채권의 이행기를 각 심급별 판결 선고일이 아닌 각 사건의 판결 확정시로 약정하여 민법 제163조 제5호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고, 수년간 M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10여 개의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④ M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도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이 상당 기간 진행 되던 중 이루어졌고, 피고가 관련 소송 항소심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하고자 하였던 상계 항변과 이 사건 소송에서 하고 있는 상계 항변은 수동채권이 없는 M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보수 중 70,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및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된 다음 날인 2021.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1.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도형석

판사이종인

판사전보람